

# 逐次刊行物の 基本記入選定에 關한 研究

崔 達 鉉\*

目 次	
I. 序 論	Ⅲ. 逐次刊行物 目錄에 있어서의 基 本記入論
II. 逐次刊行物の 記入選定에 關한 諸目錄規則의 特徵	1. 著者基本記入論
1. Joint Code	2. 書名基本記入論
2. ALA 目錄規則	Ⅳ. 韓國目錄規則과 逐次刊行物の 記入
3. 國際目錄原則會議	V. 結 論
4. 英美目錄規則	

## I. 序 論

逐次刊行物 (Serial publications 또는 Serials; 以下 逐刊物이라 한다)의 每卷 또는 號를 便宜上 하나 하나 獨立된 것으로 計算한다면 오늘날 大圖書館에서 受入되는 圖書와 逐刊物の 對比는 大體로 2:8에 이르러 19世紀까지를 <圖書의 時代>라고 稱할 수 있다면 20世紀는 <逐次刊行物の 時代>라고 할수 있게 되었다.<sup>(1)</sup> Andrew D. Osborn 에 依하면 오늘날 單行本圖書의 5分の 2가 叢書인데다 美國 政府刊行物の 80%가 逐刊物이기 때문에 美國議會圖書館의 藏書中 4分の 3以上은 性格上 逐刊物이라고 하고 있다.<sup>(2)</sup>

1609年 처음으로 印刷된 新聞이 刊行된 以來 逐刊物은 1970년까지 約 900,000 以上이 地球上에 나타났고 더욱 1950年에서 1970年の 20年동안은

\*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圖書館學科

(1) 丸山昭二郎, 目錄法と 書誌情報 (東京: 雄山閣, 昭和 50), p.235.

(2) Andrew D. Osborn, *Serial Publications: their Place and Treatment in Libraries*, 2d rev. ed. (Chicago: ALA, 1973), p.35.

## 2 도서관학 논집

年平均 15,000의 增加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每日 41種의 새로운 逐刊物生産을 뜻하는 것으로 萬一 지금까지의 成長率이 繼續된다면 앞으로 20世紀末까지는 年平均 20,000의 增加를 보일 것이고 世紀末에는 1,500,000을 凌駕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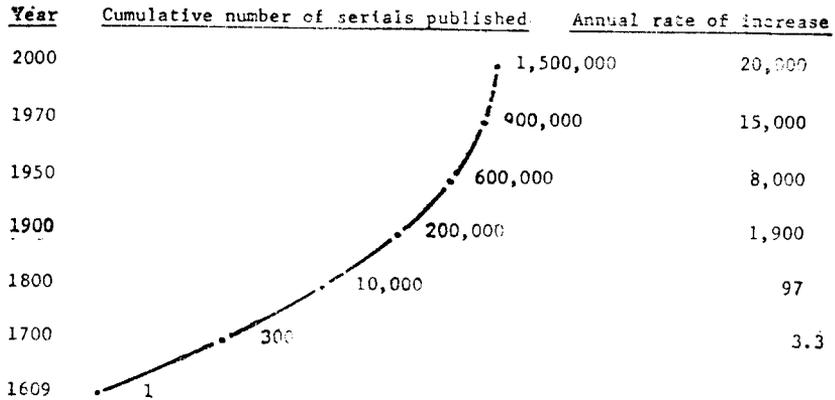


Fig.1. World production of serial publications, 1609-2000.

From: Andrew D. Osborn, *Serial Publications*, 2d rev. ed. (Chicago:ALA, 1973), p.21.

한편 先進諸國에는 未及하나 우리나라에서도 無秩序한 刊行物의 整備를 斷行했던 1961년에 344種에 不過하던 國內定期刊行物이 1976년에는 375%가 增加된 1,290種에 達하고 있다.

逐刊物의 이와같은 膨脹은 今世紀에 들어와서 急激히 發展한 知識産業의 結果 氾濫하는 情報의 迅速한 傳達媒介手段으로서 逐刊物이 單行本에 優先하기 때문일 것이다. George S. Bonn에 依하던 化學, 生理學, 物理學 등에 引用되는 모든 文獻 가운데 逐刊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各各 93%, 90%, 88%에 이르고 있어<sup>(3)</sup> 知識傳達의 主된 媒介手段이 이제 逐刊物로 바뀌었음을 잘 說明하여 주고 있다.

(3) George S. Bonn, *Litera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McGraw-Hill, 1966), p.3; Osborn, 上掲書, p.36에서 再引用.

年度別 國內定期刊行物現況

연도별	간 별	일 간	통 신	주 간	월 간	기 타간	계
1960.	12. 31	112	237	429	433	167	1,378
1961.	5. 1 (5.16 혁명 직전)	115	308	487	464	193	1,567
1961.	12. 31	38	12	33	178	83	344
1962.	7. 1	33	12	34	175	81	335
1963.	12. 31	34	8	38	156	82	318
1964.	8. 25	35	9	55	270	166	475
1965.	12. 31	39	10	104	352	164	669
1966.	12. 31	42	10	76	334	142	604
1967.	12. 31	43	10	81	340	145	619
1968.	12. 31	43	10	93	367	150	663
1969.	12. 31	44	7	101	405	190	747
1970.	12. 1	44	7	91	450	193	785
1971.	12. 31	44	7	100	469	232	852
1972.	12. 31	42	7	108	456	257	870
1973.	10. 31	37	6	112	485	275	915
1974.	10. 31	37	6	115	527	294	979
1975.	10. 31	37	7	119	654	395	1,212
1976.	12. 31	37	7	114	705	427	1,290

자료 : 國內定期刊行物 一覽表 (서울 : 文化公報部, 1977), p.162.

調査·研究와 實驗의 새로운 結果와 內容을 迅速하게 傳達하는 것을 生命으로 하는 逐刊物의 增加는 圖書館經營에 여러가지 問題를 惹起시키는 結果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目錄組織上 많은 問題點을 誘發함에 이르렀다. 逐刊物은 內容의 斬新性과 速報性, 部分性과 斷片性, 形態의 同一性, 刊行의 繼續性, 執筆者的 多數性等의 特性<sup>(4)</sup> 때문에 完全性を 가지고 있는 單行本에 비추어 未完成刊行物(Incomplete works)<sup>(5)</sup> 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編目上 單行本과는 相異하게 書誌記述을 하여옴으로서 지금까지도 逐刊物의 對象, 基本記入의 選定, 標題變更의 處理, 目錄作成의 時期等 明確

(4) 長谷川 宏, 中佐吉 勇 共著, 資料整理法特論 (東京 : 教育出版センタ, 昭和 52), pp.51~53.

(5) Michael Gorman,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in the Cataloging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9 no. 4(Fall 1975), p.302.

한 解決을 못보고 있는 問題들이 尙存하고 있다. 甚至於는 한 圖書館內에서도 카드目錄과 逐刊物受入記錄上 標目이 統一되지 못한 例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6) 더욱 前述한바 逐刊物의 急激한 膨脹과 誌價의 繼續的인 昂騰은 書誌統整(Bibliographic control)을 더욱 어렵고 複雜하게 할뿐 아니라 더욱 많은 經費를 所要하게끔 만들었다. 그리하여 圖書館界에는 地方的, 國家的, 國際的의 水準에서 書誌를 보다 合理的, 經濟的, 效果的으로 統整하기 爲하여 相互協力하고 書誌記述을 單純化하고 標準化하려는 努力이 많은 사람들에 依하여 傾注되었다. 標準化야말로 圖書館機械化에 依하여 앞으로 이룩될 “one-time cataloging” 實現을 可能케 하는 先決要件이기도 하다. (7) 特히 美國圖書館協會 目錄規則改正委員會(ALA RTSD/CCRC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e)의 逐刊物 目錄規則改正活動은 C.Sumner Spalding, Joseph H.Howard 등을 비롯한 많은 圖書館學者들로 하여금 여러 論文을 發表케 하였고 1975年 가을에는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와 <Drexel Library Quarterly>에서 各各 逐刊物에 關한 特輯을 編輯케 하는等 逐刊物目錄規則上 懸案의 問題解決을 爲한 努力을 크게 振作시켰다. 勿論 그동안의 逐刊物에 關한 많은 研究는 以前에 發表된 文獻에서 再發見되고 反復된主張으로서 처음부터 豫想되었던 것도 있었고 (8) 때로는 감정적 경험적인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60年에서 70年代에 걸쳐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世界書誌統整을 爲한 國際的論議는 1978年에 豫定된 <英美目錄規則> (AACR :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의 全面改正을 앞두고 衆知를 모우는 契機가 된것은 事實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開催되는 國立大學校 圖書館長 司書長會議의 年例

(6) Josephine S. Pulsifer, "The Special Problems of Serials," *Library Trends*, vol. 25 no.3 (January 1977), p.685.

(7) Mary Ellen Soper, "Entry of Serials," *The Serials Librarian*, vol.1 no.1(Fall,1976), p.29.

(8) David C. Taylor, "The Serials Librarian as Activist," *Drexel Library Quarterly*, vol.11 no.3 (July 1975), p. 10.

主要議題의 하나로 逐刊物の 綜合目錄編纂에 關한 案件이 上程, 論議되어 오고 있으며 地方에서도 同事業에 따르는 調查研究를 하여왔을 뿐 아니라<sup>(9)</sup> 1972년에는 西江大學校·延世大學校·梨花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의 逐刊物 綜合目錄을 實際로 刊行해낸 것을 비롯, 많은 圖書館에서 逐刊物記事索引作業을 展開하여 왔다. 그러나 書誌統整을 爲한 逐刊物書誌記述의 標準化에 關한 研究가 外國에서는 活潑하게 推進되어 온데 比하여 國內에서는 1966年에 一部 改正된 〈韓國目錄規則〉에서 逐刊物에 對하여 若干 規定한 以來 同規則의 本格的인 改正과 研究가 活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몇個 안되는 定期刊行物 目錄이나 索引誌上 逐刊物記入選定이 多様하기 이룰데 없는 實情에 있다. 本論文에서는 現下 圖書館協會가 主體가 되어 〈韓國目錄規則〉 改正을 爲한 事業이 推進되고 있음에 즈음하여 오늘날 世界的으로 論議의 對象이 되고있는 逐刊物の 記入選定에 關한 지금까지의 研究를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우리나라 主要書誌目錄上에 나타난 逐刊物記入을 檢討함으로써 問題의 提起와 改善方向을 摸索하여 보고자 한다.

## II. 逐次刊行物の 記入選定에 關한 諸目錄規則의 特徵

國際書誌記述의 標準化를 爲한 圖書館의 努力은 1961年 파리에서 史上 最初로 開催된 國際目錄原則會議(ICC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1961)를 비롯하여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各國의 圖書館協會, 유네스코 등의 活動을 通하여 國家的, 地域的, 또는 國際的次元에서 1960年代 以後 活潑하게 展開되었음은 前述한바 있거니와 이러한 活動은 資料의 檢索과 利用, 展示, 目錄의 配付等 여러가지 目的을 爲하여 作成되는 書誌를 統一된 原則과 適用으로 一貫性있게 記述함으로써 爆增하는 情報에의 迅

(9) 1976年 11月에 大邱市內 大學圖書館의 定期刊行物 綜合目錄作成과 圖書館間 相互協力 方案을 마련하고자 金南嶺 啓明大學 圖書館長이 慶大, 嶺大, 啓大 및 大邱美國公報院의 定期刊行物 購讀現況을 調查 發表한 事實이 있는바 이는 地方에서의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速한 接近과 正確한 認識을 圖謀하기 爲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 情報傳達의 主要媒介手段化한 逐刊物에 있어서도 위와같은 國際標準化運動의 一環으로 많은 學者와 關係團體에 依하여 多角的으로 研究가 이루어졌으나 其中에도 逐刊物記入選定의 問題 卽 著者基本記入과 書名基本記入의 問題는 가장 核心的인 論爭의 對象이었고 <英美目錄規則>의 改正을 앞두고 아직도 解決 못한 時急한 課題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記入의 選定에 關한 主要目錄規則은 1949年の <A. L. 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以下 ALA 目錄規則이라 함) 와 1967年の <英美目錄規則>에서 緣由된 것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다시 1908年 美國圖書館協會와 英國圖書館協會가 共同으로 마련한 <Joint Code> 에까지 溯及될수가 있다. 그리고 1961年 파리에서 63個國이 모여 記入의 選定에 關하여 意見을 모은 國際目錄原則會議의 決定事項은 其後 各國에서 制定 또는 改正된 目錄規則에 그 準據를 이루어준 規範이 되었다. 이제 <Joint Code> 以來 이들 目錄規則에 나타나고 있는 逐刊物記入選定에 關한 原則을 考察하고 그 特徵을 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 1. Joint Code

政府機關 또는 學會의 一般刊行物은 團體名아래 記入하고 學校等 營造物 團體(Institutions)의 刊行物은 그 團體의 所在地名아래 記入하도록 하고 있으나 定期刊行物은 學會 또는 協會에 依하여 刊行되는 것을 包含하여 모두 標題아래 記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刊行頻度가 1年以上 되는 定期刊行物과 單純한 學會의 議事錄, 會報, 年次報告等은 學會名아래 記入하고 다시 疑問의 境遇에는 團體名아래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어<sup>(10)</sup> 定期刊行物의 記入選定에 있어 標題와 團體名 사이를 彷徨하게 만드는 結果가 되고 있다. 實際로 F. W. Gravell 은 <World List>와 <Union List>에서 <Summary of Current Literature>가 세가지 類型으로 記入되고 있는것을 例示하여 주

(10) David Grenfell, *Periodicals and Serials: their Treatment in Special Libraries*. 2d ed. (London: Aslib, 1965), pp. 117-118.

고있다. <sup>(11)</sup> Joint Code의 이와같은 定期刊行物の 取扱은 後述하게 될 <ALA 目錄規則>과 <英美目錄規則>에도 命脈을 維持, 定期刊行物에 對한 規則自體에는 勿論 用語解説에서의 定義에서도 學會等の 研究報告, 議事錄, 會報等を 除外시키고 있는 根源이 되고 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 2. ALA 目錄規則<sup>(12)</sup>

逐刊物을 定期刊行物, 新聞, 年鑑類, 名簿, 叢書 등으로 區分, 多元的으로 標目을 選定토록 規定하고 있다. “多元的標目選定이란 各刊行物の 刊行頻度와 性格(發行團體)에 準하여 細區分을 行하고 이에 適合한 基本記入選定을 各各 세움으로써 各刊行物에 따로 準則을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13)</sup> 同規則 5條 C項에서 F項까지의 規定에 依하면 逐刊物은 一般的으로 標題아래 記入하도록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團體名아래 넣도록 하고 있다. 即 定期刊行物, 新聞, 年鑑類等은 標題아래 記入하고 特히 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Joint Code>의 例에 準하여 그것이 비록 學會, 營造物團體, 政府機關에 依하여 刊行된 것이라도 團體著者記入原則의 適用을 排除, 普通 標題아래 記入토록 하고 있으나 紀要, 研究報告, 議事錄, 會報等은 單行本과 同一하게 團體名아래 記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逐刊物에 關한 限 著作의 書誌의 內容보다 出版形式에 依하여 記入의 選定을 決定하고 있으면서도 紀要, 研究報告等은 같은 逐刊物인데도 例外的으로 出版形式의 考慮를 排除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同規則은 이와 같은 根本的인 問題以外에도 叢書, 名簿等の 取扱에 있어서나 “識別誌名”(Distinctive title)의 定義가 不明함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混亂을 惹起시키고 있다. 5條 F項에 依하면 叢書는 普通 標題아래 記入하되 編者 또는 出版者로 더 잘 알려진 경우와 “識別誌名”이 없을때는 團體名아래 記入하도록 하고 있으며 5條 E項에선 電話會社에서 發刊하는 番號簿는

(11) *ibid.*, p.120.

(1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9).

(13) 韓國圖書館協會 編, 非圖書資料의 整理 (서울: 同協會, 1968), p.50.

(이는 普通 年次的으로 刊行되는 것이다.) 會社名 아래 記入하고 其他에 依하여 刊行되는 것은 標題아래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分明 같은 性質의 逐刊物을 取扱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明白하고도 統一된 適用을 許할수 있는 基準은 現수가 없다. Mary Ellen Soper도 “亂行本에 있어서 著作의 責任을 지는 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記入이 決定되지만 逐刊物의 경우에 있어서는 標題의 明確性(Distinctiveness)의 有無에 따라 記入을 決定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識別誌名의 定義를 明白히 하고 있지 않은 데에 여러가지 混亂을 招來하고 있다”(14)라고 ALA 目錄規則의 不明像性과 그 結果를 批判하고 있다.

### 3. 國際目錄原則會議(ICCP)

1961年 파리의 國際目錄原則會議에서 合意된 基本的原則은 첫째 目錄은 基本記入과 副記入等 多記入(Multiple entries) 組織이 必要하며 둘째 個人 著者が 있을 경우에 著者が 基本記入이 되어야 하고 셋째 團體의 集團의 活動을 나타내는 著作의 基本記入은 團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基本的原則에 따라 ICCP 原則은 9.12(團體名記入)와 11.14(書名記入)의 두 條項에서 逐刊物記入의 選定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 ( 9.12) 書名 또는 標題紙의 表現의 著作의 性格에 비추어보아 團體가 그 著作 內容에 對하여 集團責任을 가지는 것이 分明할 때(17)
- (註 7) 團體名前後에 一般的用語(Generic term; *Bulletin, Transactions* 등)로 標題를 이루고 團體의 活動에 對한 說明을 하고 있는 逐刊物
- (11.14) 著者名보다 標題에 依하여 主로 또는 慣用的으로 더 알려진 著作(逐刊物과 定期刊物을 包含한다).(16)

여기에서 알수있는 것은 ICCP 原則은 分明히 모든 資料를 同一한 原則에

(14) Soper, *op. cit.*, p.24.

(15) C. Sumner Spalding, "ISBD(S) and Title Entry for Serials," *Library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33 (no.47, November 22, 1974), Appendix I: A 229-232, reprinted in *Drexel Library Quarterly*, vol.11 no.3(1975), p.23.

(16) Eva Verona, *Corporate Headings: their use in Library Catalogue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5), pp.191, 193.

따라 記入을 만들고 逐刊物을 別途로 考慮를 하지 않는 原則이지만 11.14條項에서만 逐刊物을 別途로 取扱하고 있어 9.12와 11.14 두 條項間에 相衡을 招來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ICCP 原則이 著者記入을 爲主로 하려는 主張과 書名記入을 爲主로 하려는 主張과의 不得已한 折衷의 結果라고 生覺되어진다. 實際問題로 普通 逐刊物은 JOHPER, JAMA, 등의 例와 같이 一般的 用語와 團體名이 結合된 것이 많고 또 이에 依해서 主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前記 9.12에 따라 團體名으로 記入할 것인가 또는 11.14에 따라 標題로 記入할 것인가는 決定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英美目錄規則>에서는 曖昧한 ICCP 原則 11.14 條項을 廢棄하게 된 것이다.

ICCP 原則의 이러한 規則들은 1965年版 <日本目錄規則>에도 그대로 踏襲되고 있는데 同規則에 依하면 一般的으로 逐刊物은 標題아래 記入하되<sup>(17)</sup> 1 團體의 著作物에 對하여는 例外的으로 22條에 따라 團體名아래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同 22條를 보면

(22條) 1團體의 著作은 團體名을 標目으로 한다. 이 規則에서 團體의 著作이라 함은

1. 團體의 沿革, 組織, 機能等に 關한 것.
2. 標題紙上의 表現과 그 著作의 性格으로 著作의 內容에 그 團體가 著者로서의 責任을 가지는 것이 明白한 것.

이라고 規定, ICCP 原則의 9.11 과 9.12 條項을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ICCP 原則이 받고 있는 같은 批判을 免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 4. 英美目錄規則<sup>(18)</sup>

<英美目錄規則>은 ICCP 原則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瑕疵를 認識한 나머지 ICCP 原則의 曖昧模糊한 條項들을 排除하였다. 첫째 標題속에 團體名 또는 그 略字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無視하기에는 너무나 強力한 要素이기

(17) 日本圖書館協會, 日本目錄規則, 1965年版(東京:同協會, 1965), 45條, 70條, 73條.

(1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때문에 設令 그 出版物이 團體의 活動을 說明하고 있지 않은 境遇에도 團體名아래 記入을 하고 들때 너무 曖昧한 ICCP 原則 11.14 條項을 廢棄하여 逐刊물이 標題에 依하여 主로 또는 慣用的으로 알려져 있는지와 標題속에 團體의 活動에 對한 說明이 있는지 없는지를 考慮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sup>(19)</sup> 셋째 識別誌名의 概念을 削除하였다. 이리하여 <英美目錄規則> 6條에서는 團體 또는 個人에 依한 逐刊물이 아니면 標題가 무엇이든 모두 標題아래 記入하되 다만 團體에 依한 逐刊물은 出版의 形態에 따라서 記入을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 卽 同規則 6條 1項에서 定한 定期刊行物, 叢書, 書誌, 索引, 人名錄, 人名辭典, 歷, 年鑑의 8種은 標題아래 記入하되 其他는 同條項例外 規定과 2項의 規定에 따라 團體名 아래 記入을 만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ICCP 原則보다 曖昧한 規定을 排除, 보다 具體的으로 改正한 <英美目錄規則> 6條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上記한 8種의 出版形式에 依한 區分이라는 點이다. 團體刊行物中에서 8種만 區分하여 標題아래 記入할 理由가 分明치 않다는 것이다. 勿論 이 8種을 하나의 例示的規定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6條 2項의 規定이 있는 以上 8種에 限定한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고 그렇다면 같은 性質의 逐刊물이라도 8形式의 것은 標題아래, 그리고 其他는 形式을 無視하여 團體名으로 記入해야하는 矛盾이 생긴다. 例를 들면 逐次的으로 나오는 書誌와 目錄은 前者는 6條 B1 項의 規定을 適用 標題아래 記入하고 後者는 6條 B2 項의 規定에 따라 團體名아래 記入하게 된다. 이는 記入의 選定을 出版物의 形態로써가 아니라 著作의 責任에 依하여 決定하는 <英美目錄規則>의 根本原理를 스스로 違背하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하고 있는 것은 年鑑에 對한 註釋이다. 年鑑이란 用語를 定義함에 있어서 ICCP 原則 9.11 項과 다름없이 團體의 思想이나 活動狀況을 나타내는 內容의 著作은 이에서 除外시키고 있기 때문에<sup>(20)</sup> 같은

(19) *Ibid.*, Introduction, p.3.

(20) *Ibid.*, 6B1, footnote 8, p.20.

年鑑이라도 그것이 團體의 管理에 對한 報告書의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區別하여야 하는데 이는 決코 單純한 일이 아닌 것이다.

同規則 6條에서 또 다른 하나의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는 것은 6條 B1項 例外規定에 있는 “一般的用語”(Generic term)의 概念에 對한 定義가 本文에도 用語解説에도 없다는 것이다. Mary Ellen Soper 는 이 概念을 가리켜 ALA 目錄規則上의 “識別誌名(Distinctive title)의 殘存物이며 이를 逆으로 表現한 것에 不適當한 것”(21) 이라고 하고 있다. 單純히 用語를 바꾸어 表現한다고 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6條 B1項의 例外規定에 依하여 逐刊物을 統一되게 記入하기 爲해서는 一般的 用語에 對한 明確한 概念의 定立과 더불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一覽表를 만들어 아무도 同規定適用上 混線의 餘地가 없도록 하든지 不然이면 이런 曖昧한 用語는 削除되어야 할 것이다. (22)

그리고 同條項 例外規定은 또한 實際에 있어서 오히려 本規定보다 더욱 많이 適用되어지고 있어 本末이 顛倒된 規定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23) 이는 團體名과 一般的 用語가 結付한 形態의 標題를 가진 逐刊物이 많기 때문이다. 〈New York Public Library Research Libraries' Central Serial Record〉의 實例에 依하면 最近 受入한 約 90,000의 逐刊物中 54%에 이르는 약 48,600種이 著者名 아래 記入되어 있고 이 가운데 95%가 團體著者라는 것이다. 또 48,600種 가운데 50 乃至 55%에 達하는 25,000 乃至 27,000種이 “report”, “proceedings”, 등과 같은 一般的 用語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24)

〈葉美目錄規則：北美版〉에 比하여 英國版은 逐刊物記入의 選定에 對하여 더욱 實用的으로 規定함으로써 北美版을 크게 單純化 시키고 있다. 北美版에 선 團體刊行의 逐刊物을 6條 B1項, 例外規定, 6條 B2項으로 區分 適用되

(21) Soper, *op.cit.*, p.28.

(22) *Ibid.*

(23) Neal L. Edgar, “Some Implications of Code Revision for Serial Librarians,” *The Serials Librarian*, vol.1 no.2 (Winter 1976-77), p.131.

(24) Paul Fasana, “AACR, ISBD(S) and ISSN:a Commen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49 no. 4 (1975), p.337.

어 煩雜과 錯誤를 誘發할 可能性이 있었으나 英國版에선 北美版의 例外規定만 남겨놓고 其外는 모든 團體의 逐刊物을 標題아래 記入을 統一시키고 있다. 따라서 英國版은 逐刊物의 目錄編纂과 利用을 促進하고 또한 團體名의 變更으로 因한 逐刊物의 分散을 막고 記入을 새로 作成하는 手畧를 덜게 하고 있다. 이는 北美版이 ALA 目錄規則과 더불어 多元的 標目選定の 範疇를 脫皮하지 못한 채 다만 그 表現形式만을 바꾸고 있는데 比하면 英國版은 이를 止揚, 더욱 實用的이고 明確한 規定이라고 볼수가 있다.

英國版이 北美版에 比較하여 또 하나 다른 點은 北美版에서는 볼수 없는 逐刊物의 副記入에 關한 規定을 特設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美版에선 33條 P項의 規定에 따라 紀要, 研究報告, 議事錄, 報告等과 같이 著者名 없이는 不完全하거나 無意味한 標題를 가진 著作은 書名副記入을 만들도록 規定化하지 않은데 比하여 英國版에선 同條項에도 不拘하고 6條 B項에서 標題가 標目으로 選定된 團體名으로 始作하지 않으면 書名으로 副記入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英國版이 北美版보다 逐刊物의 書名記入主義의 色彩가 더욱 濃厚함을 나타내는 側面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兩版의 逐刊物記入 選定規定上 위와 같은 差異에도 不拘하고 6條 C項의 個人에 依하여 刊行되는 逐刊物에 對하여는 共通적으로 個人의 이름아래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Jim E. Cole이 指摘하다싶이 萬一 6條 C項을 適用한다면 個人著者 및 團體著者 取投上의 不一致는 不可避하게 될것이다. Jim E. Cole은 “萬一 書誌를 編纂者아래 記入한다면 團體著者와 個人著者의 取投上 不一致가 惹起된다. 그것은 團體에 依하여 編纂된 것은 團體名下에 들어갈 것이므로 6條 B項에 따라서 標題아래 記入될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除去하기 爲해서는 6條 C項을 削除하여야 한다.”<sup>(25)</sup>라고 主張하고 있다. 6條C項은 일찌기 ALA 目錄規則이나 1967年 以前에는 볼수 없었던 規定으로서 逐刊物의 定義를 嚴格히 適用한다면 個人에 依하여

(25) Jim E. Cole, "AACR 6: Time for a Review,"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 324.

終刊豫定이 없이 無期限 繼續 出版되는 刊行物은<sup>(26)</sup>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이는 逐刊物이라고 하기보다는 軼로 看倣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特別히 個人에 依하여 刊行되는 逐刊物規定을 따로 設置하여야 할 根據는 稀薄하다고 할수 있다.

### Ⅲ. 逐次刊行物目錄에 있어서의 基本記入論

前章에서 逐刊物記入選定에 關係되는 主要目錄規則의 內容과 그 問題點을 考察하였지만 어느것도 모든 사람에게 滿足스럽고 普遍妥當한 規則이 될수는 없었으며 適用上 規則의 解釋과 判斷에 따라서 同一逐刊物에 對한 記入이 多樣하게 이루어질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고 또한 實際로 이러한 混亂이 各種의 書誌, 目錄等에 나타나고 있다. 그 原因은 資料自體, 目錄規則, 編目者等 여러 側面에서 究明되어질 수가 있겠으나 目錄規則上에서 본다면 거의 多元的標目選定の 原則에 立脚하고 있는데다가 編目者의 判斷을 하나로 歸一시킬수 있는 單一變數를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標題에 依해서 또 때로는 團體名에 依해서 右往左往하게된 탓이라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逐刊物記入選定の 標準化를 爲해서는 必然코 標題를 單一變數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單行本과 꼭 같이 著者란 變數에 依할 것인가로 크게 意見이 兩分될수 밖에 없게 된다. 勿論 이 對立되는 意見의 折衷方案으로서 <英美目錄規則：英國版> 6條 B項을 適用, 標題속에 團體名이나 그 略語가 包含된것 또는 標題가 團體名이 없이는 識別이 困難한 一般的用語로써만 構成되어 있는것을 除外한 모든 逐刊物을 標題아래 記入하자는 意見이라든지 或은 一般的用語를 가진것만 除外한 모든 逐刊物을 標題아래 統一하자는 意見<sup>(27)</sup>이 있으나 現行目錄 또는 編目作業을 大幅 簡素化 시킬수는 있을지언정 標準化를 爲한 根本的인 解決策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26)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Appendix I: Glossary, p.346.

(27) Wesley Simonton, "Serial Cataloging Problems: Rules of Entry and Definition of Tit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 19 (Fall 1973), p.295.

## 1. 著者基本記入論 (Author Main Entry)

圖書館資料는 그 形態에 關係없이 모든 資料를 同一한 原則아래 記入하여야 하고 또 記入은 資料의 出版形態에 根據를 둘것이 아니라 書誌的事實 即 著作의 責任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著者 또는 標題아래 만들어야 된다는 主張이다.<sup>(28)</sup> 著者의 概念을 堅持하는 理論的 根據로서는 첫째 記入選定에 關한 基本의 原則을 廢棄않는限 單行本과 逐刊物을 區別해서 適用할수는 없으며 둘째 一般的用語를 가지고 있는 많은 逐刊物은 團體名이 標題와 密接하고 있어 團體名標目을 使用할 경우 작은 파일(File)을 많이 만들어 利用에 便利하며 또 正確한 標題를 모를 경우에도 團體名으로 찾는 것이 보다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9)</sup> 以外에도 團體名으로 記入하면 同一機關의 刊行物記入을 함께 모을수가 있고 오늘날 研究·調査活動의 傾向이 個人으로부터 團體 또는 機關에 依한 組織的活動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비추어 機關名으로부터 檢索할수 있게하고 單行本目錄과의 一致를 期할수 있다는 등의 長點을 들고 있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團體著者에 對한 明確한 概念이 定立되고 있지 못한데다<sup>(30)</sup> 各團體에서 千態萬象으로 刊行해내는 逐刊物을 어떻게 團體의 思想 또는 活動을 表現한 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區別하느냐 하는 問題는 亦是 남게 되고 이는 ICCP 原則 9.12條가 內涵하고 있던 曖昧한 原則을 <英美目錄規則>에서 排除한 意義를 相殺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元來 著者基本記入은 西洋에서 Greco-Rome 以來 著者를 著作의 主識認要素로 가장 重要視하여온 學問的傳統에 緣由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sup>(31)</sup> 이러

(28) Spalding, *op. cit.*, pp. 20-26.

(29) Simonton, *op. cit.*, p. 295

(30) Neal L. Edgar는 前掲論文 127p.에서 "1976年 여름 현재 CCRC 에서는 團體著者의 概念을 定義하는데 成功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Eva Verona도 前掲書 8p.에서 "著者를 認定하는 數많은 目錄規則 가운데서 같은 方法으로 그 概念을 解釋하고 있는 것은 단둘도 찾기 어려웠다. 이는 國家書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披瀝하고 있다.

(31) Lois Mai Chan, "AACR 6 and the Corporate Mystiqu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 21 (Winter 1977), p. 61.

한 思想은 特히 문예부흥과 印刷術의 發明以後 더욱 強化되어 西洋社會에선 慣例의으로 著者에 依해서 著作을 確認하게 되었고 西洋文明의 影響으로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삼던 東洋에서도 現代著作은 거의 著者로써 基本記入을 삼게 되었다. 따라서 逐刊物의 書誌目錄上 著者概念을 버리고 모든 刊行物을 標題아래 記入한다는 것은 이러한 西洋學問上의 傳統을 송두리째 翻覆하는 結果가 되어 때로는 感情的인 反撥까지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다.<sup>(32)</sup>

逐刊物記入을 單行本記入과 區別하지 않고 同一한 原則을 適用하고자 하는 見解 換言하면 逐刊物記入選定에 對한 特別規則은 必要없다는 見解<sup>(33)</sup>를 파르더라도 逐刊物을 匿名의 圖書 또는 著作責任이 分散되어 있는 刊行物로 看做한다면 結局 標題아래 記入될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問題가 되는 團體著者의 概念에 있어서도 <英美目錄規則> 用語解說에서 團體의 定義를 보면 “사람의 集團”(a group of person)이란 語句를 包含하고있기 때문에 團體著者를 單一著者가 아닌 多數人의 著者로 再定義하여 ICCP 原則이나 <英美目錄規則>에 따라 標題아래 記入을 하면 지금까지의 西洋學問上의 傳統과도 相衡하지 않는 解決方案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sup>(34)</sup> 最近 <英美目錄規則> 4條 乃至 5條를 改正하여 編輯書와 合集을 書名으로 基本記入하는 것도 多數人의 著作은 標題아래 記入토록 하는 ICCP 原則을 더욱 確固히 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 2. 書名基本記入論 (Title Main Entry)

逐刊物을 標題에 따라서 記入하려는 主張의 理論의 根據는 標題가 가장 不變的要素일 뿐아니라 單純하고 理解하기가 쉬워 記憶이 容易하며 書誌, 抄錄 및 索引奉仕等에 있어 標題가 다른 어느 要素보다 檢索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 實用的 根據로서는 國家마다 團體著者에 對한 概念이 相異하기 때문에 標題아래 記入하는 것이 國際協力上 보다 容易할 뿐아니라 機械可讀데이

(32) Edgar, *loc. cit.*

(33) Michael Carpenter, "No Special Rules for Entry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Fall 1975), pp. 327-332.

(34) Chan, *op. cit.*, p. 65.

타 베이스(Machine-readable data base)에도 더욱 適合하고 逐刊物の çeking, 製本等 圖書館 内部活動上에도 보다 容易하고 效果的이며 美國議會圖書館과 같은 大圖書館의 經驗에 依하여도 標題에 따라 排列하는 것을 勸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根據에서 實際 國際의 標準과 〈World List of Serials〉 라든지 〈Cumulated Index Medicus〉 또는 〈定期刊行物記事索引〉等 主要書誌에선 標題아래 記入하고 있다.

書名基本記入은 東洋에서 일찍부터 慣用되어 왔으나 유럽에 있어서도 中世末에 이르기까지는 恒用되어 왔다. Lois Mai Chan 에 依하면 독일 傳統에 있어서는 〈German's Saga〉, 〈Anglo-Saxon poem〉, 〈Early epic and tale〉等 大部分의 無著者古典에서 엿볼 수 있다싶이 著者概念은 그렇게 강한 것이 못되었다고 한다.<sup>(36)</sup> 〈英美目錄規則：英國版〉 6條 B項은 이러한 구라과의 書名主義哲學과 團體著者概念의 傳統이 강한 美國哲學과의 折衷을 圖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性向은 目錄規則自體에서도 엿볼 수 있는바 〈英美目錄規則：北美版〉 6條 B2項의 例에 있는 〈Precipitation in Tennessee River Basin〉은 北美版에선 團體名아래 記入하라고 指示하고 있는데 反하여 英國版에선 標題아래 記入하고 있다.

오늘날 目錄의 機械化(Automation)와 國際化(Internationalism) 運動이 한낱 信仰의인 希望으로부터 現實로 發展<sup>(38)</sup> 됨에 이르러서는 目錄의 機能도 檢索目錄(Finding list) 으로서의 機能이 強調되어 記入選定에 關한 問題도 언젠가 目錄의 有用性이란 見地에서 判斷되어서야 하고 그러기 爲해서는 目錄規則內에 있어서의 齊一性(Integrity of cataloging)도 重要하나 모든 逐刊物을 標題아래 記入함으로써 安定되고 迅速한 書誌奉仕를 圖謀하려는 氣運이 圖書館界에 크게 膨滿하게 되었다. 오늘날 出版되는 多様な 雜誌目錄을 보면 書名主義의 便이 많은것도 文獻의 確認, 相互貸借, 複寫業務等을 맡고 있는 立場에서 보면 가장 實態에 가까기 때문이라고 할수가 있다. 定

(35) Simonton, *op. cit.*, p.296.

(36) Chan, *op. cit.*, p.61.

(37) Chan, *op. cit.*, p.513.

(38) Gorman, *op. cit.*, p.309.

期刊行物を 標題아래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ALA 目錄規則 5條 C項의 定期刊行物에 對한 限定的意義와 逐刊物에 對한 注意不足으로 團體名基本記入의 傳統이 確立된 美國에 있어서도 1975年 目錄改正委員會(CCRC) 에서는 뒤에 번복은 되었지만 모든 逐刊物을 標題아래 記入하도록 建議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9)</sup>

書名基本記入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意見을 모아야할 問題는 무엇을 標題로 볼 것인가 또 一般의用語로된 標題를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라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이에 對하여 逐刊物의 個別化와 國際의登錄을 目的으로 하는 國際逐次刊行物데이터 시스템(ISDS :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과 逐刊物의 國際標準書誌記述을 目的으로 하고 ICCP 原則의 餘則이라고 할수 있는 ISBD(S)는 가장 代表的인 逐刊物의 書誌記述上 標準이라고 할수 있다. 이 두개의 國際의標準은 未來의 逐刊物目錄規則을 爲한 標準으로서 모두 記入의 選定에는 言及이 없으나 逐刊物을 國際의으로 登錄하거나 書誌의으로 記述할 때 어떻게 記錄할 것인가에 對한 規則이기 때문에 그 機能은 本質的으로 記入의 選定과 關係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처음 ISDS *Guidelines* 가 實用化되자 <英美目錄規則>과는 많은 點에서 差異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Joseph H. Howard는 兩者의 差異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면서 標題아래 記入을 統一하면 問題는 解決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AACR 과 ISDS *Guidelines* 間의 記入上 差異는 逐刊物이 變更되었을 때 가장 큰 問題이다. 왜냐하면 國際標準逐次刊行物番號(ISSN)는 書誌의事項보다는 標題를 根據로 하여 부여되고 새로운 番號는 새로이 記入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標題가 새로워질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AACR 에서는 標題가 變更되었을때 또는 發行團體가 바뀌었을때 새로운 記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發行團體만 바뀌었을때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差異가 생긴다.”<sup>(40)</sup>

(39) Soper, *op. cit.*, p.36.

(40) Joseph H. Howard, "Main Entry for Serials,"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33 (no.47, November 22, (1974), Appendix 1:A232-236, reprinted in *Drexel Library Quarterly*, vol.11 no.3(1975), pp.11-19.

ISBD(S)는 ISDS *Guidelines* 과 意識的으로 調和를 試圖하면서 發展하여 왔다. ISBD(S)는 標題의 記載를 識別誌名(Distinctive title)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定義하기를 “並列書名, 副書名 또는 其他書名을 除外한 主로 識別할수 있는 書名(Chief identifying title)”<sup>(41)</sup> 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ISDS *Guidelines*에선 Key title 을 使用하고 逐刊物의 個別化를 爲해서 固有의 番號(ISSN)를 부여하고 있다. Key title 이란 ① 그 出版物에 나타나는 標題情報에서 導出하되 識別할수 있어야 하고 ② 萬一 團體名이 標題의 첫 要素이거나 또는 文法的으로 標題의 餘他部分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거나 一般的用語를 包含하고 있는 境遇에는 團體名도 들어갈 수가 있고 副標題는 包含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2)</sup>

大部分의 경우 ISBD(S)의 識別誌名과 ISDS의 Key title은 一致하지만 ISDS에서는 記述要素로서 個人 또는 團體著者를 記入하는 位置가 없다는 點과 同一한 標題를 갖는 逐刊物에 있어서는 Key title 다음에 出版地 또는 初刊年度等의 限定的要素를 괄호속에 넣어 追加하지만 ISBD(S)에선 出版事項記載位置에 記入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標題가 一般的用語로 되어 있을때는 著作에 나타난대로 記錄하되 團體名을 하이픈(-)으로 連結하고 있는것은 ISDS와 ISBD(S) 共히 같다. 이것은 IFLA와 UNESCO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 ISBD(S)가 ISDS의 影響을 받은 탓으로 생각된다 <英美 目錄規則>은 ISBD(S)와 一致되도록 하기 爲하여 162條 B項을 削除하고<sup>(43)</sup> 또 一般的用語로만 이루어진 標題에는 하이픈(-)으로써 著者表示를 하도록 함으로서<sup>(44)</sup> 兩者는 標題記述上 一致하게 되었다.

ISDS의 Key title 概念은 記述目錄規則에 많은 影響을 끼치기 始作<sup>(45)</sup> 앞으로 同規則의 公式的要素가 될것으로 豫想되며 또 逐刊物에 對한 모든 記入도 目錄의 機械化가 促進되면 될수록 標題아래 記入하고자 하는 壓力이

(41) IFLA, *ISBD(S)* (London: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4), p.2.

(42) Simonton, *op.cit.*, p.296.

(43) *Cataloging Service, Bulletin* 108, April 1974, quoted in Joseph H. Howard, *loc.cit.*

(44) *Cataloging Service, Bulletin* 109, May 1974, quoted in Joseph H. Howard, *loc.cit.*

(45) 實例에 對하여는 Soper 前揭論文 p.32를 參照.

漸次 높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一般的用語의 뚜렷한 定義에 對하여는 아직 <英美目錄規則>이나 ISBD(S)에 規定된바 없고 오직 各國의 모든 ISDS Center에서 採擇하고 있는 Unpublished ISDS Guideline이 있을 뿐인데 이에 對한 定義가 確固해야 記入의 選定과 標題의 記載를 統一시킬 수 있을 것이다. 同 Guideline에 依하면 一般的用語란 出版物의 種類 또는 刊期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具體的으로 다음性質을 갖는 用語는 一般的用語로 볼수 없다고 하고 있다.<sup>(46)</sup>

- (1) 主題의 內容이나 分野를 가르키는 用語를 가진것
- (2) 出版物의 種類나 刊期를 가르키는 用語以外的 用語를 包含하고 있는것
- (3) 頭字語(Acronym 또는 Initialism)을 包含하고 있는것
- (4) 一般的으로 主要單語 다섯개 이상 가진것

이 一般的用語에 對하여는 앞으로 國際書誌統整上 繼續 研究 檢討되어 時急히 標準化하여야 할 課題라고 생각한다.

#### Ⅳ. 韓國目錄規則과 逐次刊行物の 記入<sup>(47)</sup>

<韓國目錄規則>의 逐刊物記入選定原則도 <英美目錄規則>과 마찬가지로 第6條에서 多元的으로 標目を 選定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英美目錄規則：英國版>보다 複雜性을 더하고 있다. 同規則에 依하면 年鑑, 人名錄, 電話番號簿等(6條 a), 雜誌(6條 b), 新聞(6條 c), 叢書, 全集, 講座(6條 d), 定期的 또는 逐次的索引(19條)等 一般的으로 逐刊物은 標題아래 記入토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ALA 目錄規則 5條와 71條의 關係規定을 본받아 6條 B(5)項에서는 “學會, 公共機關, 또는 政府機關에서 發行하는 雜誌도 一般的으로 그 誌名을 標目으로 하고 發行하는 團體名을 副出”하고 있다. 이는 政府機關에서 出版되는 刊行物은 團體名아래 記入함을 原則으로 하는 60條에 對한

(46) Howard, *op. cit.*, p. 15.

(47)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서울: 同協會, 1966).

變則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一般論文集에 對해선 特別規定이 없으면서 8條에 記念論文集만을 따로이 規定, 學會나 其他團體에서 出版한 경우에는 團體名을 標目으로 하고 그 以外의 記念論文集은 書名을 標目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記念論文集이면서 標目選定の 基準을 달리한 點이라든지 또한 記念論文集은 一般論文集의 繼續되는 號中의 一部分으로 出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條 B(5)項과 8條의 適用上 混亂을 免할수가 없게 되어 있다.

또한 <韓國目錄規則>은 5條 d項의 叢書規定을 ALA 目錄規則 5條 F(2)項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기 때문에 ALA 目錄規則과 같은 曖昧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編者나 出版者로 더 알려진…”<sup>(48)</sup>의 基準은 主觀의이어서 <韓國目錄規則> 74條에 例示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韓國文化史大系”는 “고려대학교”아래 記入될수도 “韓國文化史大系”아래 記入될 수도 있다. 實際에 있어서도 國內各圖書館 및 書誌마다 叢書取扱이 다를 뿐아니라 같은 書誌內에서도 標目選定原則이 一定하지 않은 形便이다. 우리나라 代表的國家書誌인 <대한민국출판물 총목록><sup>(49)</sup>에 依하면 叢書는 大部分 叢書名아래 記入하고 있는듯하나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다. 出版社文庫까지 叢書名으로 記入하면서도 研究所刊行의 叢書는 叢書名아래 記入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것은 翻譯者名아래 記入되기도 한다.

例: 博英文庫, 서울, 博英社, 1974.

近代화와 救國運動 (韓國學 資料叢書 第3輯) 서울, 永信아카데미 韓國學 研究所, 1974.

古典國譯叢書, 民族文化推進會 編, 서울, 探究堂, 1975.

또한 같은 大學出版部の 叢書이면서 어떤것은 叢書名으로 어떤것은 다른것으로 記入된 것도 있다.

例: 김정환, 페스탈로찌의 教育思想(교양문고 5),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大學文庫,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5.

(48) 韓國目錄規則 5條 d(1)項

(49)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197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6).

더욱 上記例에서 標目으로 選定안된 “敎養文庫” “韓國學 資料叢書” “韓國學 研究所” 등은 어느 하나라도 索引에 副記入으로서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依해서 檢索할수는 없게 되어 있다.

以外에도 <韓國目錄規則>의 改正時 考慮되어야할 하나의 問題는 團體名과 關聯, 一般的用語의 取扱問題라고 生覺된다.

一般的用語의 問題는 構文上 西洋語에만 惹起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우리나라에서도 一般的用語로서만 書名을 이루고 있는 例가 許多하게 發見된다. 몇가지 例를 들면 “論文集” “調查報告” “統計月報” “年次報告” “研究報告” “年報” “會報” “會誌” “藏書目錄” 따위이다. 1977年 1月 10日 現在 國內定期刊行物 1,290種中 團體에 依하여 發行되는 것이 全體의 約 7割에 이르는 886種<sup>(50)</sup> 이나 되고 또 同年 11月 慶北大學校 所藏論文集 162種을 分析한 結果 標題紙와 版權紙 共히 “논문집”으로만 되어 있는것이 全體의 約 4割에 이르는 64種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的用語와 團體名의 取扱에 對한 規定이 <韓國目錄規則>에는 찾아 볼수 없기 때문에 書誌目錄上 混亂을 빚고 있음은 否定못할 事實이다. 張一世는 <英美 目錄規則>에 準하여 團體名取扱을 하도록 說明하고 있으면서도 問題의 曖昧性을 밝히고 있다.

誌名에 確實히 學會나 團體 또는 政府機關을 指稱하는 用語가 들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機關에 對한 略語가 表示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機關名을 基本記入으로 한다. 이에 對한 구별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야기 될수도 있는데...다시 말하면 단체명이나 그에 대한 略語가 誌名에 表示된것 같이 느껴지는 誌名이 있기 때문이다.<sup>(51)</sup>

即 完全한 團體名이 아닌 경우 어디까지 團體名의 略語로 보느냐에 對한 一律的인 基準을 設定하기가 困難함으로 <英美目錄規則>을 그대로 適用하기란 適合하다고 할수가 없다.

(50) 國內定期刊行物一覽表 (서울:文化公報部, 1977), p.161.

(51)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68), p.129.

實際 各種 國內書誌目錄에서도 目錄規則上의 未備때문에 團體名과 一般的用語의 取扱이 多樣하게 記入되어 書誌統整에 큰 支障을 招來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逐次刊行物의 代表的인 綜合目錄이라고 할수 있는 서강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3개 대학교의 <逐次刊行物綜合目錄>과 國會圖書館의 <경기 간행물기사색인> <경부간행물목록>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에서조차 例外는 아니었으며 같은 書誌內에서도 同一刊行物에 對하여 때로는 團體名아래 때로는 一般的用語아래 記入되고 있는것도 볼수가 있다.<sup>(52)</sup> 이러한 현상은 各圖書館의 目錄에서도 窺知할수 있는바 77年 11月 大邱市內 各大學圖書館의 目錄에서 定期刊行物 180種을 調査한 結果에서도 같은 樣相을 나타내었다. 몇 가지 例擧하면 <도협월보>를 “한국도서관협회”와 “도협월보” 아래, <亞細亞研究>를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래, <논단>을 “미국공보원”과 “논단”아래 各各 記入하고 있는 따위이다. 勿論 이러한 書誌나 目錄에서 基本記入으로 採擇이 안된것은 副記入을 만들어 利用에 不便을 없앨수도 있으나 逐刊物의 累增現象이 해마다 加速化되어가고 綜合目錄이 多量으로 나오게된 오늘날 資料의 檢索可能한 要素別로 모두 副記入하기란 時間과 空間, 그리고 豫算等 事情때문에 漸漸 어려워지고 單一記入으로서 書誌 또는 리스트를 만들어야할 形便인 것이다. Jim E. Cole의 調査에 依하면 <Serial Publications in the University of Iowa Libraries 1972> 속에 A字 아래만도 1,900 以上の 團體名이 있는데 그中 많은 逐刊物이 標題로부터 副記入 또는 參照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distinctive”란 概念이 大端히 曖昧하기 때문에 많은 逐刊物이 團體名아래 記入되고 이를 일일이 標題副記入을 만들어 주면 目錄에 너무나 큰 負擔이

(52)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逐次刊行物 綜合目錄 1972	<table border="0"> <tr> <td>學術院論文集</td> <td rowspan="3">정기간행물 기사 색인</td> <td>學術院論文集</td> </tr> <tr> <td>무역진흥</td> <td>무역진흥</td> </tr> <tr> <td>무역통계월보</td> <td>무역통계월보</td> </tr> </table>	學術院論文集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學術院論文集	무역진흥	무역진흥	무역통계월보	무역통계월보
學術院論文集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學術院論文集						
무역진흥		무역진흥						
무역통계월보		무역통계월보						
대한민국출판물 총목록 1971	<table border="0"> <tr> <td>學術院</td> <td rowspan="3">정중공사</td> <td>학술원 논문집</td> </tr> <tr> <td>대한무역</td> <td>무역진흥</td> </tr> <tr> <td>판세청</td> <td>무역통계월보</td> </tr> </table>	學術院	정중공사	학술원 논문집	대한무역	무역진흥	판세청	무역통계월보
學術院	정중공사	학술원 논문집						
대한무역		무역진흥						
판세청		무역통계월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3)</sup> 設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副記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完全한 書誌의 情報는 恒常 基本記入 아래서 찾을수있게 되는것이 普通이기 때문에 副記入을 거쳐 基本記入에 이르는 利用者의 時間的 損失과 副記入作成에 따르는 圖書館側의 人的, 經濟的, 時間的負擔은 莫大할 것이다. 論者에 따라서는 多記入(multiple entries)을 만듦으로써 便利하고 經濟的이며 合理的인 檢索이 可能하게된 오늘날 基本記入과 副記入의 區分은 아카데미한 것으로만 보일지 모르나 逐刊物에 있어서는 하나의 基本記入 밑에 所藏位置와 所藏事項을 記述하게되고 또 基本記入의 選定에 따라 새로운 記錄을 언제 만들것인가를 決定할수 있기때문에 兩者의 區別은 必要하고 有用한 것이다.<sup>(54)</sup> 따라서 各種 書誌目錄上 統一된 原則에 依하여 基本記入이 만들어짐으로써 目錄의 檢索機能을 十分 다하게 할수 있는 目錄規則의 補完이 重且大하다고 하겠다.

## V. 結 論

出版과 同時에 書誌記述上 完結을 期할수 있는 單行本에 比하여 逐刊物은 發行團體의 組織 및 名稱의 變更, 統廢合, 編輯內容의 變更等 여러가지 事情에 따라 또는 單純히 時代的인 感覺에 맞추기 爲하여 標題나 出版責任이 變更됨으로 보다 動的적이고 伸縮性있는 記錄을 要한다. David C. Taylor는 年間 標題變更을 하는 雜誌는 5% 로서 10年以上 繼續되는 雜誌리스트를 보면 約 50%는 過去 10年동안 標題를 變更하였고 標題變更한 雜誌의 生命은 그렇지않은 雜誌보다 길다고 하고있다.<sup>(55)</sup> 또한 標題뿐 아니라 出版責任을 가진 團體名도 平均 15年 乃至 20年만에 變更이 된다고 한다.<sup>(56)</sup>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에도 찾아 볼수 있는바 1967.9.10 現在 文公部에 登錄된 定期刊行物(日刊·週刊除外) 466種中 1977.1.10 現在까지 繼續刊行되는 雜誌

(53) Cole, *op. cit.*, p. 315.

(54) Richard Anable, "CONSER: Bibliographic Considera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49 no. 4(1975), p. 343.

(55) Taylor, *op. cit.*, p. 5.

(56) Osborn, *op. cit.*, p. 39.

는 208種으로 45%에 未達하고 그나마 標題나 發行人을 變更하지않고 처음 誌名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雜誌는 33%에 不過하는 155種 뿐이었다.<sup>(57)</sup> 그동안 얼마나 變化가 尤甚하였는가 하는 事實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年 동안 文公部에 雜誌를 登錄한 件數가 1,627件인데 比하여 廢刊 또는 登錄取消된 件數가 1299件으로 年平均 130種의 雜誌가 廢刊되고 160餘種의 雜誌가 새로이 登錄된 事實에서도 엿볼수 있다.<sup>(58)</sup>

이렇듯 變化가 甚하고 流動的인 逐刊物의 目錄記入은 單行本처럼 單純하지가 않다. 特히 20世紀 逐次刊行物時代에 들어와서 天文學的인 情報의 量的 膨脹은 資料의 收集과 保存, 利用面에서 圖書館間의 相互協力을 不可避하게 만들었고 UNESCO, IFLA 等の 國際機構로 하여금 書誌統整을 爲한 國際的 努力을 活潑히 展開하도록 만들었다. 그 結果 ISOS의 勸告案, ISDS *Guidelines*, ISBD'S 等 여러가지 標準의 制定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逐刊物의 編目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爭點이 되어오던 記入의 選定에 關한 主要目錄規則上의 規定들을 分析 檢討함과 아울러 同規定들의 相異한 解釋과 適用으로 因한 各種 書誌目錄上의 混亂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混亂을 止揚하고 書誌의 標準的記述을 期함으로서 編目과 檢索을 다같이 容易하게 하려면 逐刊物에 對한 ALA 目錄規則以來의 多元的標目選定의 原則을 廢棄하고 單一變數에 依하여 記入을 選定케 하는 目錄規則의 簡素化가 要請된다. 勿論 目錄規則上 單行本과 逐刊物의 齊一性問題가 惹起될수 있으나 目錄의 檢索機能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생각할때 記入의 選定도 目錄의 有用性的의 見地에서 考慮되어야 할것이다.

單一變數로서의 著者基本記入과 書名基本記入에 對한 考察은 이미 本文에서 論하였지만 要컨데 오늘날 逐刊物의 書誌目錄上 混亂은 一般的用語와 團體名의 取扱에 集約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sup>(59)</sup>

(57) 文公部發行의 1967.9.10 現在 및 1977. 1. 10 現在 國內定期刊行物 一覽表를 對照한것임.

(58) 國內定期刊行物 一覽表 1970.2.1; 1974.10.31; 1977.1.10 現在の 各附表에서 調査한 것임.

(59) Jim E. Cole의 調査에 依하면 <New Serial Titles>의 1971年 累積版속에는 標題아래 記入될수 있는 203種의 逐刊物이 "United States" 아래 記入되어 있고 또 LC카드를 보면 같은 IEEE 出版物인데도 어떤것은 IEEE 아래 어떤것은 그 下部機關名아래 또 어떤것은 標題아래로 分散되어 있다는 것이다. (Cole, 前掲論文, p.319)

따라서 實際로 標題에 依해서 더 많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著作責任이 分散되거나 或은 恒常 變動하는 未完成刊行物(Incomplete works)로서의 遂刊物의 特性을 考慮, 모든 遂刊物을 標題야래 記入하는 것이 보다 有用하리라 생각되며 標題는 刊行物에 나타나 있는대로 採記하여야 할 것이다. 萬一 標題속에 團體名이 包含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 國語는 英語의 語順과 다르기 때문에 一般的用語가 英語에서 처럼 標題 맨 처음에 오지 않고 보통 〈團體名+一般的用語〉의 形式이 되어 〈경북대학교 논문집〉 〈서울대학교 논문집〉으로 論文集이 分散됨으로 排列와 利用上 큰 問題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一般的用語의 概念과 그 一覽表의 作成에 關한 問題는 보다 廣範하고 多角的인 實證的 研究를 必要로 하는 앞으로의 課題라고 할 수가 있다.

#### 參 考 文 獻

註로써 代身함.

## Main Entry of Serials

Choe, Dal-Hyun\*

[Abstract]

Many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entry of serials in cataloging. Though they believe the form of AACR 6 should be revised, the agreement was not yet reached among them.

Whereas some librarians advocate no different entry in cataloging between monographs and serials, some agree that all serials are to be entered under its title. Main arguments are on the concepts of "corporate authorship" and "generic title". On account of disagreement on these concepts, there appear different ways of serials entry in various catalogs or bibliographies.

Being no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corporate authorship" in Korean Cataloging Rules, main entry of a serial was quite different either in a few national bibliographies or some universities' catalogs in Taegu City.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pleteness and changing authorship or diffused authorship of serials, it is desirable to revise and simplify our cataloging rules as to all the serials are to be entered under its title. This would b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serials, eg. ISDS and ISBD(S). When a generic term is included in a title, it will not be an important problem as the title would be usually made up in the form of "corporate name+generic term".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of construction of the words between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